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5일, 조경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 의원)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보존 선박 등(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함)에서는 그 선박에 대한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 이는 선체노후 등으로 인한 침수·침몰·파공이 발생하여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해양오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침수·침몰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원인에 대해 방제의무가 발생하고, 해양경찰청의 긴급방제 및 배출방지조치도 사고 이후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비점이 있음. 이와 관련,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위해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 위해도가 높은 선박은 잔존유 제거 등과 같은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사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을 조사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선박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해양환경 위해도를 평가하고, 필요시 배출방지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고질적인 오염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위해도 평가 및 배출방지조치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오염 취약선박 등 해양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개정안은 선박소유자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위험성 평가를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수정하고, 다른 조문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문구를 통일하며, 기사용하고 있는 용어와의 혼선 방지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위험성 평가를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오염방지조치를 사전에 실시하려는 것으로, 선박소유자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위험성 평가를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수정하고, 다른 조문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문구를 통일하며, 기사용하고 있는 용어와의 혼선 방지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2. 오염물질배출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115조제4항 중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해양오염 취약선박”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생략) <u><신설></u>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장기간 계류, 계선 및 방치된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u>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u>

경우에는 직접 위
해도 평가 및 배출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의 소유자 또는 선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오염 취약
선박의 소유자 또
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
과를 통지받은 경
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를 하
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
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취약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
이 되지 않는 경
우

2. 오염물질배출방

②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③ (생략)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③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u>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u>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 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	--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u>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u>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 ----- ----- <u>-해양오염 취약선박</u>----- ----- ----- ----- ----- ----- ----- -----. ⑤ ~ ⑦ (개정안과 같음)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115조제4항 중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해양오염 취약선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 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생략) <u><신설></u>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 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 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 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 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 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 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 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 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 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 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 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를 하여 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신설></u>	

②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③ (생략)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해양오염 취약선박----- -----
--	---

<u>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⑤ ~ ⑦ (생략)	-----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	---